

#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sanaigo@kwu.ac.kr\*

##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Cyber Space

Kwang-Hyun, Park\*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 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 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 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키워드:** 정보통신망법(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개인정보보호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자기결정권( A Righ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 I. 서론

인터넷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확대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은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상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라는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sup>4)</sup>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정보가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검색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특정 사건에 관한 정보를 찾기도 쉬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발달해온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정의된다.<sup>5)</sup>

## II. 잊혀질 권리의 개관

### 1. 현황

현행법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저작권법 등에서 일정부분 도입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보호범위가 死者를 제외한 생존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등 식별력 있는 정보에 제한된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요구에 응할 행위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게시하거나 제3자가 게시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삭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셋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중단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저작물에 관한 삭제권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형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침해를 가져온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4)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by J.D.라시카

5) 홍명신, 정보의 웨딩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동향, 언론중재 제31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2011, 21면.

등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각칙상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및 형법총론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의해 면책이 가능하다. 다섯째, 민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같은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공익이 목적 또는 정보주체가 직접 게시한 내용을 링크하는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2.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의 특성

### 2.1 사후적 권리성

잊혀질 권리는 타인에게 공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시된 자료를 사후적으로 공개된 정보상태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후적 권리의 특성을 갖는다. 공개 이후의 정보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제한의 침해성 및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 2.2 지속성

잊혀질 권리에 대한 침해 상황은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속성과 동시에 잠재적인 지속성을 띤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구제방법이 기술적으로도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면 사실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실심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가상공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한 것이다.

### 2.3 구조적 특이성

잊혀질 권리의 인정여부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라는 기본권 충돌관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따라 양 권리의 중요성도 형태의 범주에서 모든 헌법적 원칙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원칙으로는 공익이론, 공적인물이론, 권리포기이론, 인격형성론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대 민주사회에서 비교형량을 통한 조화로운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판례와 같이 공개내용을 5가지 유형 즉,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 사회적 영역, 공익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인정여부를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3. 외국의 입법례

EU는 1995년에 정보보호법(DPD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해 검색 사업자를 데이터 수집업체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2012년에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인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GDPR는 ‘잊혀질 권리’의 성립을 4가지로 구분한다. 6) 첫째,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및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셋째, 정보주체가 레굴레이션 제19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넷째, 정보처리 절차가 다른 이유로 레굴레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다. 유럽연합 GDPR에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므로, 잊혀질 권리의 적용대상은 예외로 규정한 영역을 제외하고 포괄적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유럽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토대로 ‘잊혀질 권리’라는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더 중시해 왔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양 국가 간 입장 차이를 꾸준히 보여 왔다.<sup>7)</sup>

## III.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의 한계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데 사이버공간은 정보의 전파와 보유에 그 본질이 있는데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된다면 또 다른 국가기관의 검열의 기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적인물들에게 정보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잊혀질 권리의 대상의 범위 및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적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 IV. 기본권 충돌의 해결

잊혀질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의 발현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발현이다. 반면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달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매체보다 자율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6) GDPR, 제17조 제1항

7) 유럽 인권협약 제8조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장을 넓혀 헌법의 틀 내에서 규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위한 자기정보결정권도 정보화시대에 점점 중요시되는 것이므로 양립불가능한 권리로 파악하기 보다는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특히 소송법상 우리 대법원은 미국연방대법원<sup>9)</sup>과는 달리 언론보도로 인해 공적인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매체에 있고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sup>10)</sup> 입증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 V. 결론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가 제3의 자원이 되어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도 수집, 정리,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의 정보도 부득이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수집, 관리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공간적으로도 또 내용면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대다수 국가들이 법률 혹은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 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 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물여부, 유럽연합의에서 제시한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고, 관련없고, 과도한 정보로써 데이터 프로세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References

- [1]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동향, 언론중재 제31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 [2] kdhong, "An Efficient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5, No. 1, 2010.
- [3] D.H.Ballard, "Computer Vision," Prentice-Hall, pp.76-79, 1991.
- [4] kdhong,, "C Programming Language" Korea-Press, 1991.

8) 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 결정.

9) 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10) 대법원 1998.5.8. 97다34563 판결.